

구미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분석

2018. 09.

구미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분석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개요

□ 추진배경 및 근거

- (도입취지) 조선밀집지역 대책('16.10.31)을 제도화한 것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
-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2~6('17.6.2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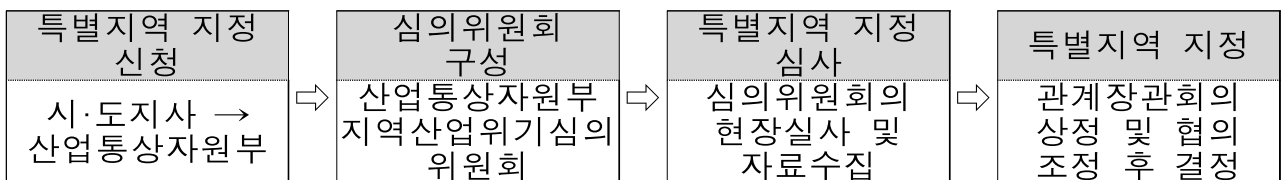
□ 지정현황

- 현재 총 6곳이 지정
 - * 전북 군산(4.5),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5.29, 5곳 추가지정)

□ 지정요건

-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산업특화도, 지역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의 요건 충족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 지정절차



□ 지정시 지원 내용

-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

2

지정요건 분석 결과

□ 구미시 주요 제조업 현황

- 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 5년간('12~'16) 생산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역 제조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

구분	연평균성장률 ('12~'16)		'16년 기준		관련 지역 산업
	생산액	부가가치액	1인당 부가가치액	제조업내 종사자 비중	
262 전자부품 제조업	-5.2%	0.1%	273백만원	11.9%	모바일·디스플레이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9.4%	-13.7%	688백만원	24.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 전자부품제조업의 종사자수는 전국대비 11.9%, 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은 전국대비 24.6%를 차지하여 모바일·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높음

(단위: 개, 명, %)

	전체		전자부품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69,068	2,963,237	1,810	168,289	1,039	60,367
경북	5,252	257,231	112	21,862	100	15,752
구미	1,010	84,098	79	19,964	78	14,839
	전국대비(1.5)	전국대비(2.8)	전국대비(4.4)	전국대비(11.9)	전국대비(7.5)	전국대비(24.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6.

- 그러나, 최근 7년간('10~'16) 지역 내 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의 종사자수는 점차 감소 추세임

(단위: 명, %)

	전체			전자부품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10년	'16년	증감률	'10년	'16년	증감률	'10년	'16년	증감률
전국	2,636,177	2,963,237	12.4	149,069	168,289	12.9	88,647	60,367	-31.9
경북	230,886	257,231	11.4	23,998	21,862	-8.9	18,794	15,752	-16.2
구미	86,833	84,098	-3.1	21,754	19,964	-8.2	17,420	14,839	-14.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0, 2016.

□ 분석 결과

전자부품 제조업은 지정요건 ①-①과 ②-① 및 ②를 충족하지 못함

○ 구미시 지정요건 분석(262.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구 분	지정기준	분석결과	충족기준	충족 여부
① 충족 요건	①산업특화도	4위	지역 2순위 이내	×
	②지역내 비중	9.94	0.56 이상	○
	③지역산업구조 다양성	34.67	36.56 이하	○
② 종합적 고려사항	①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0% 증가	10% 이상 감소	×
	②광업제조업 생산지수	19.9% 증가	10% 이상 감소	×
	③아파트매매가격지수	10.3% 감소	5% 이상 감소	○

주) 기업경기실사지수(BSI_전자·영상·통신장비) 및 광업제조업(전자부품제조업) 생산지수는 전국기준 지수임.

* 주된 산업분류는 특별지역 지정신청일 기준 최신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함.

통신및방송장비 제조업은 지정요건 ①-①과 ②-①을 충족하지 못함

○ 구미시 지정요건 분석(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구 분	지정기준	분석결과	충족기준	충족 여부
① 충족 요건	①산업특화도	3위	지역 2순위 이내	×
	②지역내 비중	7.68	0.21 이상	○
	③지역산업구조 다양성	34.67	36.56 이하	○
② 종합적 고려사항	①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0% 증가	10% 이상 감소	×
	②광업제조업 생산지수	23.7% 감소	10% 이상 감소	○
	③아파트매매가격지수	10.3% 감소	5% 이상 감소	○

주) 기업경기실사지수(BSI_전자·영상·통신장비) 및 광업제조업(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생산지수는 전국기준 지수임.

* 주된 산업분류는 특별지역 지정신청일 기준 최신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

- 구미시의 주요 산업인 모바일·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특화도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의 기준미달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가능성은 존재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사례) 창원 진해구의 경우 산업구조 다양성,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량평가 점수가 지정기준 미달이었지만, 정성평가를 고려해 지정됨(한겨레, 2018.5.29.)

□ 지정 실익 검토

- 향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구미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역외 기업 유치의 어려움* 및 지역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 가중 예상

* 특히 구미5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업유치 애로 가중

-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2018.4)에 따르면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붙임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준****□ 지정대상**

- 행정구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 있음.

□ 지정기준

- ①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은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 특화도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LQ)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입지계수 $LQ_i = \frac{Y_i^r}{Y^r} / \left(\frac{Y_i^n}{Y^n} \right)$, $Y_i^{r(n)}$: r지역(전국) i산업 종사자수, $Y^{r(n)}$: r지역(전국) 전체 종사자수)

- 지역내 비중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군·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
-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DI)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다양성지수 $DI_j = \frac{1}{\sum_i \left(\frac{Q_{ij}}{Q_j} \right)^2}$, Q_{ij} : j지역내 i업종 종사자수, Q_j : j

지역 업종군별 종사자수)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주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 주된 산업 분야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군·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 지역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 지역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실사의 결과
 -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세부 분석결과

□ **광업·제조업 대상 분석 결과(추가분석)**

전자부품 제조업은 지정요건 1-①, ③과 2-①, ②를 충족하지 못함

○ 구미시 지정요건 분석(262.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구 분	지정기준	분석결과	충족기준	충족 여부
1 충족 요건	①산업특화도	4위	지역 2순위 이내	×
	②지역내 비중	23.56	3.36 이상	○
	③지역산업구조 다양성	9.44	6.60 이하	×
2 종합적 고려사항	①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0% 증가	10% 이상 감소	×
	②광업제조업 생산지수	19.9% 증가	10% 이상 감소	×
	③아파트매매가격지수	10.3% 감소	5% 이상 감소	○

주) 기업경기실사지수(BSI_전자·영상·통신장비) 및 광업제조업(전자부품제조업) 생산지수는 전국기준 지수임.

* 주된 산업분류는 특별지역 지정신청일 기준 최신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함.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은 지정요건 1-③과 2-①을 충족하지 못함

○ 구미시 지정요건 분석(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구 분	지정기준	분석결과	충족기준	충족 여부
1 충족 요건	①산업특화도	2위	지역 2순위 이내	○
	②지역내 비중	17.51	1.52 이상	○
	③지역산업구조 다양성	9.44	6.60 이하	×
2 종합적 고려사항	①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0% 증가	10% 이상 감소	×
	②광업제조업 생산지수	23.7% 감소	10% 이상 감소	○
	③아파트매매가격지수	10.3% 감소	5% 이상 감소	○

주) 기업경기실사지수(BSI_전자·영상·통신장비) 및 광업제조업(전자부품제조업) 생산지수는 전국기준 지수임.

* 주된 산업분류는 특별지역 지정신청일 기준 최신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지정기준별 세부 분석결과

① 충족요건

○ 산업특화도 분석(전산업 대상)

코드	업종	입지계수(LQ)	기준 (2순위 내)	충족 여부
205	화학섬유 제조업	32.59	1	○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2.74	2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1.98	3	×
262	전자부품 제조업	11.88	4	×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8.83	5	×

주) 전산업 소분류 223개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6)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지역내 비중 분석(전산업 대상)

코드	업종	지역내 비중(%)	기준 (전국 평균+2표준편차 이상)	충족 여부
262	전자부품 제조업	9.94	0.56	○
264	통신및방송장비 제조업	7.68	0.21	○

주) 전산업 소분류 223개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6)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산업특화도 분석(광업·제조업 대상)

코드	업종	입지계수(LQ)	기준 (2순위 내)	충족 여부
205	화학섬유 제조업	12.29	1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8.62	2	○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7.93	3	×
262	전자부품 제조업	4.16	4	×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79	5	×

주) 광업 및 제조업 소분류 92개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16)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지역내 비중 분석(광업·제조업 대상)

코드	업종	지역내 비중(%)	기준 (전국 평균+2표준편차 이상)	충족 여부
262	전자부품 제조업	23.56	3.36	○
264	통신및방송장비 제조업	17.51	1.52	○

주) 광업 및 제조업 소분류 92개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16)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② 종합적 고려사항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분석

업종	2016.8	2018.8	기준 (증감률/10%이상 감소)	충족 여부
전자·영상·통신장비	70	84	20.0%	×

주) BSI 값은 해당산업의 업황실적BSI를 6개월 이동평균한 값으로 전국기준 지수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분석

업종	2016.7	2018.7	기준 (증감률/10%이상 감소)	충족 여부
전자부품 제조업	91.0	109.0	19.9%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79.9	61.0	-23.7%	○

주) 생산지수는 해당산업의 원지수를 6개월 이동평균한 값으로 전국기준 지수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분석

지역	2016.8	2018.8	기준 (증감률/5%이상 감소)	충족 여부
전국	98.3	100.3	2.0%	
경상북도	106.8	97.3	-8.9%	
구미시	108.3	97.1	-10.3%	○

주)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6개월 이동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

□ 분석자료

-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 주요산업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2(전자부품 제조업)', '264(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로 정함
- 지역 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 비교 기준이 되는 '전국 시·군·구의 지역 내 산업 비중 평균과 표준편차'는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전국의 시·군·구 250개 지역의 비중 평균과 표준편차임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의 전국 평균 역시 전국 250개 지역의 다양성 지수를 평균한 값임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전자·영상·통신 장비' 분야의 전국 업황실적 BSI를 분석함
- 광업제조업 생산지수는 주된 산업분야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의 전국 생산지수 원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지역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시계열통계표를 활용하여 분석함

붙임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

- (근로자 및 실직자) 2단계 지원대책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등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강화됨
 - * 실직자의 구직급여 종료(최대 240일)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완화
 - * 직업훈련 중인 실직자의 생계비 대출한도 확대(1→2천만원)
 - * 생활안정대부 대출요건 완화, 대출한도 대폭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대출 요건	자녀학자금 등	월소득 246만원 이하	월소득 302만원 이하
	임금채불생계비	연소득 4,420만원 이하	연소득 5,430만원 이하
대출 한도	자녀학자금(자녀당)	500만원	700만원
	임금채불생계비	1,000만원	2,000만원

- (기업체)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인건비를 지원함
 - * 사업을 위기지역으로 이전·신설 또는 증설하고, 지역주민을 6월 이상 상시 고용시/1일 6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 1/2을 지급(대규모기업의 경우 1/3)
 - * 위기지역 퇴직자 채용시 취업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
 - *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
-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해 장기·저리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전환을 촉진함
 - * (대출금리 인하) 2.3→1.8%(18.1/4 기준) (대출한도) 최대 70억원(운전자금 5억원)
(대출기간) 시설자금 최대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 최대 5년(2년 거치)
- (지역산업)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수시 예비타당성 제도 활용하여 신속추진)
 - * 지역 기반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 사업 추진